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64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9월 3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를 준용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).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5항 중 “반환한다.” 를 “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를 준용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~ ④ (생략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div>	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<u>반환한다.</u>	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<u>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를 준용한다.</u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청년공간의 사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제13조를 준용한다.</u>